

2023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1 시니어인턴십이란?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사업참여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3년생 및 이전출생자)

2 참여대상

1) 참여자

- 일반형 참여자: 만 60세 이상 자
- 세대통합형 참여자: 만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 필요

○ 참여제외

-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전년도 체험형 참여 후 타유형으로 참여하는 경우('22년 참여 이후 적용) 및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
- ③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④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인턴십 참여기간 중 근로일 30일 이하 일용직제외) 부적격자로 관리

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참여가능한 예외경우)

-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 전년도 체험형으로 참여한 경우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으로 재참여 가능('22년 참여 이후 적용)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인턴 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2) 참여기업

○ 참여기업요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

※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총 450개 직종) / 가능직종(391개 직종) : 세종 직종은 부록 참고

※ 단, 기업 여건상 4대 보험 가입 요건이 일부 미충족 되는 사업장의 경우, 가입 요건이 충족 되는 보험의 가입내역과 미충족 사유 제출 후 인정 시 참여 가능

○ 참여자에 대해 1년 이상 장기고용의사가 있는 기업 및 계속 고용률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

○ 참여 제외 기업 및 직종

<참여 제외 기업>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단,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참여 제외 직종>

제외 직종(59개 직종)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 관리자, 법률·경찰·소방·교도관리자, 경비·청소관리자,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회계사·세무사·감정전문가, 조세행정·관세행정·국가지방행정 사무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5개 직종, 시민단체 활동가,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 경찰관·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의사 5개 직종, 약사 및 한약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경호·보안 종사자 4개 직종, 경비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가사도우미, 제품·광고 영업원,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온라인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우편집배원, 조경원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

*** 파견직은 참여제외(단, 수행기관 위탁없이 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심의 후 참여가능)

3 지원내용

구분	참여기업 지원금		
	총액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 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1인당 30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장기취업 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총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22년 참여자부터 적용

구분	2022	2023																				
지원금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유형</th> <th>참여기업 지원금 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형</td> <td>월 최대 40만원, 최대 6개월</td> </tr> <tr> <td>체험형</td> <td>월 최대 30만원, 최대 3개월</td> </tr> <tr> <td>세대 통합형</td> <td>1회 300만원</td> </tr> <tr> <td>장기취업 유지형</td> <td>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일시금)</td> </tr> </tbody> </table>	지원유형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내용	일반형	월 최대 40만원, 최대 6개월	체험형	월 최대 30만원,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1회 300만원	장기취업 유지형	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일시금)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유형</th> <th>참여기업 지원금 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형</td> <td>동일</td> </tr> <tr> <td>체험형</td> <td>삭제</td> </tr> <tr> <td>세대 통합형</td> <td>동일</td> </tr> <tr> <td>장기취업 유지형</td> <td>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td> </tr> </tbody> </table>	지원유형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내용	일반형	동일	체험형	삭제	세대 통합형	동일	장기취업 유지형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지원유형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내용																					
일반형	월 최대 40만원, 최대 6개월																					
체험형	월 최대 30만원,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1회 300만원																					
장기취업 유지형	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일시금)																					
지원유형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내용																					
일반형	동일																					
체험형	삭제																					
세대 통합형	동일																					
장기취업 유지형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참여 신청	신설	<p>참여기업 실행계획서에 대한 심의요청일 기준 이미 해당 기업에 취업한 자(일반형)는 참여불가 ※소급적용 불가능</p> <p>※참여시작일 이전 개인 취업자에 대한 소급 엄격관리</p> <p>※시니어 인턴십(일반형) 참여 신청 후 입사자만 지원금 지급 가능</p>																				
참여자 신청 제외	<p>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p> <p>- 일용직(1개월 이하)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p> <p>- 전년도 체험형 참여 후 타유형으로 참여하는 경우('22년 참여 이후 적용) 및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p> <p>③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p> <p>④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p> <p>- 일용직(1개월 이하)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p> <p>-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p>	<p>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p> <p>-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p> <p>- 전년도 체험형 참여 후 타유형으로 참여하는 경우('22년 참여 이후 적용) 및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p> <p>③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p> <p>④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p> <p>-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p>																				

구분	2022	2023
	<p>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p> <p>*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 부적격자로 관리</p>	<p>-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p> <p>*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인턴십 참여기간 중 근로일 30일 이하 일용직제외) 부적격자로 관리</p>
재참여 제한	<p>일반형, 체험형 참여자는 인턴기간 3개월을 초과하거나 세대통합형 참여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연도 내 재참여 불가</p>	<p>일반형 참여자가 인턴기간 3개월을 초과하거나 채용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세대통합형 참여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기취업유지형 참여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연도 내 재참여 불가</p>
근무 형태	<p>개발원과 협의 후 외근, 재택근무 가능</p>	<p><u>외근영업, 재택근무 불가</u></p>
현금 지급	<p>현금지급 확인서 양식내 증빙제출사항 없음</p>	<p>현금지급 사유 확인 증빙서류 추가 EX) 은행에서 발급된 증빙서류</p>
참여 기관 제외	<p>신설</p>	<p>① 가능 직종(391개 직종) : 세부 직종은 부록 참고 ② 제외 직종(59개 직종) : 세부 직종은 부록 참고</p> <p>*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 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 *** 파견직은 참여제외(단, 수행기관 위탁없이 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심의 후 참여가능)</p>
참여 기업 위반 사항	판단구분	위반사항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빙 및 부속서류 미비 등 비치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 부적정 등) 기타 운영안내 및 위탁계약 미준수(경미한 사항)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격 참여자 채용 및 지원금 신청 근로기준법령, 최저임금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노동관계법령 등 각종 법령 위반(경미한 사항) ex) 사회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등 주의 조치 시정 불이행 기타 운영안내 및 위탁계약 미준수(중대한 사항)

구분	2022	2023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95 315 486 660">계약해지</td> <td data-bbox="486 315 1412 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 참여자 채용 및 지원금 신청 • 근로기준법령, 최저임금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노동관계법령 등 각종 법령 위반(중대한 사항) • 기존직원 퇴직 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사업 참여 • 참여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수급 • 인턴십 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 • 경고 조치 시정 불이행 • 개발원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295 660 1412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별 시정지시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 위반행위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시 5년간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5년간 인턴십 참여 금지) </td> </tr> </table>		계약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 참여자 채용 및 지원금 신청 • 근로기준법령, 최저임금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노동관계법령 등 각종 법령 위반(중대한 사항) • 기존직원 퇴직 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사업 참여 • 참여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수급 • 인턴십 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 • 경고 조치 시정 불이행 • 개발원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별 시정지시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 위반행위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시 5년간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5년간 인턴십 참여 금지) 	
계약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 참여자 채용 및 지원금 신청 • 근로기준법령, 최저임금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노동관계법령 등 각종 법령 위반(중대한 사항) • 기존직원 퇴직 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사업 참여 • 참여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수급 • 인턴십 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 • 경고 조치 시정 불이행 • 개발원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별 시정지시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 위반행위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시 5년간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5년간 인턴십 참여 금지) 						

5 문의 및 접수처

-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TEL. 070-7780-2440
 E-Mail. sccisenior@naver.com
 adress.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펠리체타워3, 5층

- 세종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http://sejongcci.korcham.net>